



부적합 판정 수입녹용 무더기 적발

- 잇가 71억원어치, 21명 적발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수입녹용'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제약회사 대표와 수입업자 등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H제약 대표 유모(37)씨 등 4명을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S제약 대표 이모(4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캐나다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녹용 21톤(시가 45억여원) 가량을 수입,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중 18톤 가량을 정상 녹용으로 유통시켜 7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구속된 H제약 대표 유씨는 지난 2000년 12월께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논란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엘크사슴 녹용 750kg을 들여와 판매하는 등 전국의 한약재 판매업소와 한의원 등에 부적합 녹용 900여kg을 몰래 팔아 3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식약청은 수입업자들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에 대해 30일 이내에 해외반송 또는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했을 뿐 현장 확인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도 약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는 등 형량이 가벼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수입된 녹용량은 지난해의 경우 76.2톤으로 이중 28.6%인 21.8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녹용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국 한약재 판매업소와 한의원 등에 유통된 불량 녹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25일 방송 3사의 주요 뉴스시간을 통해 자세히 보도, 당분간 소비자들의 수입녹용 기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족양륙**



▲ 경찰에 의해 압수된 녹용